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2. 3 규칙 제 995호
일부개정 2020. 9. 28 규칙 제1013호
일부개정 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
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3. 10. 13>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결) 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0. 9. 28, 2023. 10. 13>

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9. 28, 2023. 10. 13>

1. 별표 제1호에 따른 출석위원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 1의2. 별표 제2호에 따른 출석위원별 점수를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2. 별표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

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8, 2023. 10. 13>

- 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
- 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
- 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
- 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0. 13>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8 규칙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요양 지정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한 자 및 「건축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를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료를 고시할 수 있다.

부칙 <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3. 10. 13>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시설(복지용구 제외)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35																																				
	<input type="checkbox"/>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20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사회복지사업법</th> <th>노인복지법</th> <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 </tr> </thead> <tbody> <tr> <td>15점</td> <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 </tr> <tr> <td>12점</td> <td>개선명령</td> <td>경고</td> <td>경고</td> <td>-</td> </tr> <tr> <td>9점</td> <td>시설장 교체 1회</td> <td>사업정지 30일 이하</td> <td>업무정지 30일 이하</td> <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 </tr> <tr> <td>6점</td> <td>시설장 교체 2회</td> <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 <td>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td> <td>-</td> </tr> <tr> <td>3점</td> <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 <td>사업정지 90일 초과</td> <td>업무정지일 90일 초과</td> <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 </tr> <tr> <td>0점</td> <td>시설폐쇄</td> <td>사업폐지</td> <td>지정취소</td> <td>-</td> </tr> </tbody> </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②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table border="1"> <thead> <tr> <th>점수</th> <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 </tr> </thead> <tbody> <tr> <td>5점</td> <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 </tr> <tr> <td>3점</td> <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 </tr> <tr> <td>0점</td> <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 </tr> </tbody> </table>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input type="checkbox"/> 설차· 운영자의 휴· 폐업 이력 - 설차· 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 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0%;">점수</th> <th style="width: 90%;"><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th> </tr> <tr> <td>5점</td> <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td> </tr> <tr> <td>3점</td> <td>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td> </tr> <tr> <td>0점</td> <td>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td> </tr> </table>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5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input type="checkbox"/> 설차· 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과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 평가 최초 등급(최초 등급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조정 적용이전 등급) ① 신규설치 또는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0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0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4									
	<input type="checkbox"/>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 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3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3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17									
자 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7점)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① 매우우수:4점 ② 우수:3점 ③ 보통:2점 ④ 미흡:1점 ⑤ 해당없음:0점	4									
	<input type="checkbox"/> 운영총당적립금 및 환경개선총당금 적립 방법 및 금액 적정 여부(ex 보험으로 가입 부적정)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④ 해당없음:0점	3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8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18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절한지 여부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및 직원 고충처리 제도 마련 여부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① 우수:3점 ②보통:2점 ③미흡:1점 ④ 해당없음: 0점	3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대면평가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2. 복지용구제공시설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설치 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35점)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관련 감점사유	35																																												
	□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행정제재 처분 이력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배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및 시설장 행정제재 처분 이력 <table border="1" data-bbox="310 551 958 993"> <thead> <tr> <th>점수</th> <th>사회복지사업법</th> <th>노인복지법</th> <th colspan="2">노인장기요양보험법</th> </tr> </thead> <tbody> <tr> <td>15점</td> <td colspan="4">행정처분 이력 없음</td> </tr> <tr> <td>12점</td> <td>개선명령</td> <td>경고</td> <td>경고</td> <td>-</td> </tr> <tr> <td>9점</td> <td>시설장 교체 1회</td> <td>사업정지 30일 이하</td> <td>업무정지 30일 이하</td> <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td> </tr> <tr> <td>6점</td> <td>시설장 교체 2회</td> <td>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td> <td>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td> <td>-</td> </tr> <tr> <td>3점</td> <td>시설장 교체 3회 이상</td> <td>사업정지 90일 초과</td> <td>업무정지일 90일 초과</td> <td>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td> </tr> <tr> <td>0점</td> <td>시설폐쇄</td> <td>사업폐지</td> <td>지정취소</td> <td>-</td> </tr> </tbody> </table> ② 장기요양요원(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table border="1" data-bbox="310 1048 958 1206"> <thead> <tr> <th>점수</th> <th>노인장기요양보험법</th> </tr> </thead> <tbody> <tr> <td>5점</td> <td>행정처분 이력 없음</td> </tr> <tr> <td>3점</td> <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td> </tr> <tr> <td>0점</td> <td>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td> </tr> </tbody> </table>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20	
	점수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12점	개선명령	경고	경고	-																																										
9점	시설장 교체 1회	사업정지 3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일 30일 초과 90일 이하	-																																										
3점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일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점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이하																																													
0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제공제한 처분 6개월 초과																																													
□ 설치·운영자의 휴·폐업 이력 - 설치·운영자가 이전 운영 기관의 잦은 휴·폐업으로 안정적 급여 제공을 저해한 이력에 다른 배점 <table border="1" data-bbox="310 1388 958 1547"> <thead> <tr> <th>점수</th> <th><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th> </tr> </thead> <tbody> <tr> <td>5점</td> <td>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td> </tr> <tr> <td>3점</td> <td>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td> </tr> <tr> <td>0점</td> <td>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td> </tr> </tbody> </table>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5																																					
점수	< 급여제공 이력 배점 기준 >																																													
5점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 6개월 이하																																													
3점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 6개월초과 12개월 이하																																													
0점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 12개월 초과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input type="checkbox"/>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 및 수시평가 최초등급(최초 등은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등급) ① 신규설치 또는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또는 평가제외 등:0점	10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1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1	
	<input type="checkbox"/>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인권 및 노인학대예방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직원 교육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소방·화재·안전 등 시설관리 포함)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3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및 절차 마련 여부 ① 우수:3점 ② 보통:2점 ③ 미흡:1점	3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14	
자원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4점)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 수립 적정성 및 재무상태 건전성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직원의 임금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4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등	20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input type="checkbox"/> 복지용구 이용자에 대한 정기상담 실시계획 수립 여부 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	8
<input type="checkbox"/> 복지용구 소독매뉴얼 및 소독용구, 보호장구 등의 구비 여부 ① 우수:8점 ② 보통:6점 ③ 미흡:4점 ④ 매우미흡:2점		8	
<input type="checkbox"/> 복지용구 전시, 체험,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제품관리 대장 구비 여부 ① 우수:4점 ② 보통:3점 ③ 미흡:2점 ④ 매우미흡:1점		4	

항목	심사기준	배점	점수
대면평가 (20점)	대표자 대면평가	20	
	<input type="checkbox"/>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도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기관운영이념 및 사업 목표, 공익성 등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input type="checkbox"/>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5점 ② 우수:4점 ③ 보통:3점 ④ 미흡:2점 ⑤ 매우미흡:1점	5		

3. 장기요양기관의 입지조건

항목	심사기준	적부	비고
해당 지역 노인 인구수, 장기요양 급여수요 등 지역 특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1조제3항제4호)	심사자료 : 노인인구수 및 장기요양급여수요 등 지역특성현황을 용인시장이 고시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요양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한 지역 <input type="checkbox"/> 지역 특성(접경지역 등)		

* 비고.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별표 제3호는 심사하지 아니한다.